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
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1월 12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^{11/08}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51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‘체납액’이라 한다)”을 “지난년도 체납액(직전년도 부과분은 익년 2월까지 제외하며, 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13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 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”을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부과액”을 “징수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□ 개정 이유

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‘직전 연도 부과분’은 익년 2월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(제2조제2항제1호)

나.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(징수금의 30%)를 교부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 세목에 대한 징수촉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함 (제2조제2항제2호)

다. 조문 정비 (제3조)